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43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2. 7. 1.
접수 제40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6069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5. 10. 확정되었다.

나. D은 2020. 7. 9. 아산시 E에 있는 제지하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22.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은 채권이 있는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해 D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다하지 않고 있지 아니한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별지